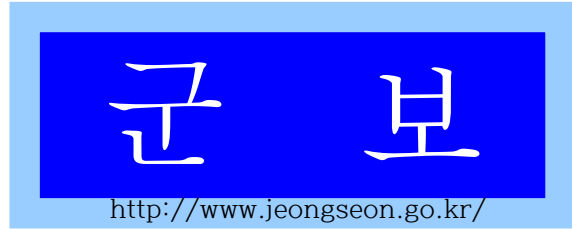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47호 2023. 12. 6.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91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1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1341호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3
- 정선군 공고 제2023-1355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안 전부개정  
입법예고.....22
- 정선군 공고 제2023-1360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2호,소로3-10호)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38
- 정선군 공고 제2023-1364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도로, 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42

- 정선군 공고 제2023-1372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46
  
- 정선군 공고 제2023 -1373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54
  
- 정선군 공고 제2023-1403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3
  
- 정선군 공고 제2023-1408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 2차.....6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91호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22-33호(2022. 2. 18.)로 최초 결정된 정선(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3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 나. 명 칭 : 덕송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설명    | 군계획시설 결정 |           | 실시계획 인가                                                                                                                                                                                                                                                                                                                                                                                                                                 | 비 고 |
|--------|----------|-----------|-----------------------------------------------------------------------------------------------------------------------------------------------------------------------------------------------------------------------------------------------------------------------------------------------------------------------------------------------------------------------------------------------------------------------------------------|-----|
|        | 세부시설명    | 규 모       | 금회시행                                                                                                                                                                                                                                                                                                                                                                                                                                    |     |
| 수도공급설비 | 덕송통합정수장  | A=11,046㎡ | □ 통합정수장 A=11,046㎡(Q=6,70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수정 : W3.0m×L3.5m×He3.0m×2지</li> <li>• 혼화지 : W2.0m×L2.0m×He2.3m×2지</li> <li>• 응집지 : W3.3m×L5.4m×He3.0m×3지×3단</li> <li>• 침전지 : W3.6m×L25.0m×He3.6m×3지</li> <li>• 배출수지 : W6.0m×L10.5m×He5.0m×2지</li> <li>• 배슬러지지 : W4.0m×L4.0m×He4.0m×2지</li> <li>• 여과지 : W3.5m×L4.5m×4지 (급속)</li> <li>• 정수지 : W16.0m×L22.8m×He5.0m×2지</li> <li>• 농축조 : Ø4.5m×He3.5m×2지</li> </ul> |     |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 토지조서

| 연번 | 위치      | 지번    | 지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 공부      | 편입     | 주소    | 성명 | 관계인   | 성명 |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
| 1  | 정선읍 덕송리 | 628-1 | 전  | 722     | 722    | 정선군   |    |       |    |                |
| 2  | 정선읍 덕송리 | 628-3 | 잡  | 475     | 475    | 정선군   |    |       |    |                |
| 3  | 정선읍 덕송리 | 529-2 | 잡  | 1,369   | 1,369  | 정선군   |    |       |    |                |
| 4  | 정선읍 덕송리 | 630   | 잡  | 1,471   | 1,471  | 정선군   |    |       |    |                |
| 5  | 정선읍 덕송리 | 630-1 | 잡  | 598     | 598    | 정선군   |    |       |    |                |
| 6  | 정선읍 덕송리 | 630-2 | 전  | 1,267   | 1,267  | 정선군   |    |       |    |                |
| 7  | 정선읍 덕송리 | 630-3 | 전  | 400     | 400    | 정선군   |    |       |    |                |
| 8  | 정선읍 덕송리 | 631   | 잡  | 1,502   | 1,502  | 정선군   |    |       |    |                |
| 9  | 정선읍 덕송리 | 631-1 | 전  | 3,242   | 3,242  | 정선군   |    |       |    |                |
| 계  |         |       |    | 11,046  | 11,046 |       |    |       |    |                |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1341호

##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 등(안 제1조~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제8조)
  -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1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 시행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9조~제17조)
  - 군수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안 제18조~제25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제 26조~제31조)
  - 협동조합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등 지원 근거 규정
  - 탄소중립 지원센터, 기후대응기금의 설립 · 운영, 설치 근거 규정
-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함

## 3. 첨부파일

- 기본조례안 : [붙임1]-4page
- 참고조례안 : [붙임2]-15page
- 관련법발췌 : [붙임3]-28page

## 4. 입법예고 : 2023. 11. 15. ~ 2023. 12. 5.(20일간)

##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환경과)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45),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문화예술회관 2층 환경과)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붙임1]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정선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정선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정선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탁하여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정선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8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민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

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민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1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붙임2]

## &lt;참고 조례안&gt;

(○○시·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이 참고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조례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 참고조례안은 각 지역에서 조례 입안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 참고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군·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군·구의 책무) ① 시·군·구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

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군·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군·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군·구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군·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군·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sup>1)</sup>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군·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군·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1) 조례 입안시 2050년 또는 이전 연도를 탄소중립 목표연도로 설정 가능함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군·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자체 결정)<sup>2)</sup>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군·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자체 판단하에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급으로 지정하여 입안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사무국)<sup>3)</sup>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3)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려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9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군·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시·군·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군·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군·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7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군·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지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군·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시·군·구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붙임3]

## 관련법 발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중립시·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

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1355호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안 전부개정 입법예고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정 선 군 수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도모하고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운행지역, 운전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광역이동지원센터 활용 등을 명문화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 법적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3.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
  -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안 제19조)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26조에서 정하는 지역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규정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안 제25조)
  -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양평군, 충청북도 제천시’로 구체화
-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6조)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7조)



-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안 제29조)
  - 위탁기간 : 3년 이내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신설(안 제30조)
- 부칙
  - 안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 안 제3조(이동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 4.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5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2층 교통관리사업소
- 전 화 : 033 - 560 - 2465
- F A X : 033 - 562 - 6400
- e-mail : wjddud1235@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 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 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장

2.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저상버스 도입)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3분의 1 이상이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에서 정하는 지역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3. 65세 이상의 사람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9조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9조제1호 및 제2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2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가 제2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2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2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④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관외 운행에 따른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로 한다.

가. 관내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양평군, 충청북도 제천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이하 “운전자”라 한다)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지원하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 ④ 운전자는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 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
- 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 ⑤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 ⑥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⑦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호출로 이용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도착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7.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관리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① 군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 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동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항은 이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⑧ 생략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나)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 붙임 1

## 규제영향분석서(서식)

## I. 분석대상 규제개요

| 1. 조례명<br>(규제사무명)             | 정선군 교통약자의<br>이동편의 증진 조례                                                                                                                                                                                                                                                                                                                                                                                                                                                                                                                  | 2. 구분  |   |        |  |            |   |                |  |
|-------------------------------|------------------------------------------------------------------------------------------------------------------------------------------------------------------------------------------------------------------------------------------------------------------------------------------------------------------------------------------------------------------------------------------------------------------------------------------------------------------------------------------------------------------------------------------|--------|---|--------|--|------------|---|----------------|--|
|                               |                                                                                                                                                                                                                                                                                                                                                                                                                                                                                                                                          | 신<br>설 | ○ | 강<br>화 |  | 내용<br>심사   |   | 존속<br>기한<br>연장 |  |
| 3. 소관 부서명 및<br>작성자 인적사항       |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br>교통행정팀장 신지영, 주무관 정영훈                                                                                                                                                                                                                                                                                                                                                                                                                                                                                                  |        |   |        |  |            |   |                |  |
| 4. 근거법령 등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br>-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4<br>-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br>-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   |        |  | 관 련<br>규제수 | 2 |                |  |
| 5. 피규제집단 및<br>이해관계자           | ○ 정선군 심한장애자 등록현황 : 1,273명<br>○ 65세이상의 사람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br>○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대상자<br>○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        |  |            |   |                |  |
| 6. 규제존속기한                     | ○ 상위법 및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인한 조례·규칙 개정시까지                                                                                                                                                                                                                                                                                                                                                                                                                                                                                                       |        |   |        |  |            |   |                |  |
| 7. 현행규제 및<br>신설(강화) 규제의<br>내용 | <u>제20조</u>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정선군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br>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br>2. 65세 이상의 사람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br>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하며, 각 호의 이용자는 제26조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통약자가 정선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정선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br>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대상자<br>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br>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   |        |  |            |   |                |  |

|                                        |                                                                                                                                                                                                                                                                                                                                                                                                                                                                                                                                                                                                             |
|----------------------------------------|-------------------------------------------------------------------------------------------------------------------------------------------------------------------------------------------------------------------------------------------------------------------------------------------------------------------------------------------------------------------------------------------------------------------------------------------------------------------------------------------------------------------------------------------------------------------------------------------------------------|
| <p>7. 현행규제 및<br/>신설(강화) 규제의<br/>내용</p> | <p>제28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p> <p>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p> <p>⑤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p> <p>⑥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하거나 무단 불이용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p> <p>⑦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 할 수 있다.</p> |
|----------------------------------------|-------------------------------------------------------------------------------------------------------------------------------------------------------------------------------------------------------------------------------------------------------------------------------------------------------------------------------------------------------------------------------------------------------------------------------------------------------------------------------------------------------------------------------------------------------------------------------------------------------------|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 항 목              | 분 석 내 용                                                                                                                                                                                                                                                                                          |
|------------------|--------------------------------------------------------------------------------------------------------------------------------------------------------------------------------------------------------------------------------------------------------------------------------------------------|
| 1. 규제의 필요성       | <p>제2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p> <p>○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이용대상자 한정</p> <p>○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제공이 필요하므로 이용대상자 한정으<br/>로 최선의 이동서비스 제공</p> <p>제28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p> <p>○ 특별교통수단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 후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함.</p> <p>○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질서있고 안전한 이동권 제공</p> |
| 2. 규제대안 검토       | <p>○ 최소한의 규제로 다른 별도 규제대안 검토 불필요</p> <p>○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여부<br/>: 불가능, 조례 위임사항 미제정으로 이용자 혼란 및 불편 발생</p> <p>○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없음</p>                                                                                                                                                      |
| 3. 비용과 편익분석/비교   | <p>○ 보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이동권 보장</p>                                                                                                                                                                                                                                     |
| 4. 경쟁제한적 규제영향 분석 | <p>○ 해당사항 없음</p>                                                                                                                                                                                                                                                                                 |
| 5. 규제의 적정성       | <p>○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자치법규 정비 및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규제 대상 없음</p>                                                                                                                                                                                    |
| 6. 이해관계자 협의      | <p>○ 입법예고 진행예정 : 2023. 9. 7 ~ 9. 26(20일간)</p>                                                                                                                                                                                                                                                    |
| 7. 규제집행의 실효성     | <p>○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신뢰도 향상</p>                                                                                                                                                                                                                  |
| 8. 부서 자체심사 의견서   | <p>○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규제의 신설·강화는 적절하다고 판단 됨.</p>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4. 작성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 익 군

정선군 공고 제2023-1360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2호, 소로3-10호)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1992-15호(1992. 2. 13.)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2호) 및 정선군 고시 2023-41호(2003. 5. 9.)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10호)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도로)

2) 명 칭

가) 1공구 : 백두대간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정선5일장 아라리로) 조성사업

나) 2공구 : 정선 소2-2호(녹송둔치)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설명          | 군계획시설 결정 |                                | 실시계획 인가                                                                                              | 비 고 |
|--------------|----------|--------------------------------|------------------------------------------------------------------------------------------------------|-----|
|              | 세부시설명    | 규 모                            | 금회시행                                                                                                 |     |
| 교통시설<br>(도로) | 소로2-2호   | □ L=982m, B=8m<br>(A=7,856㎡)   | □ 1공구(관광과 시행)<br>- L=600m, B=4.0~8.0m, A=3,075㎡<br>□ 2공구(도시과 시행)<br>- L=360.7m, B=2.5~4.5m, A=1,639㎡ |     |
|              | 소로3-10호  | □ L=450m, B=000m<br>(A=2,733㎡) | □ 2공구(도시과 시행)<br>- L=94.6m, B=2.5~4.5m, A=506㎡                                                       |     |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1공구 관광과장, 2공구 도시과장)
-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3. 11. 24. ~ 2023. 12. 8.)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 토지조서(소로2-2호 : 1공구)

| 연번 | 위치      | 지번    | 지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 공부      | 편입    | 주소                | 성명    | 관계인   | 성명 |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
| 1  | 정선읍 봉양리 | 2-2   | 제방 | 6,052   | 1,898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정선군   |       |    |                |
| 2  | 정선읍 봉양리 | 2-34  | 제방 | 521     | 68    | “                 | 정선군   |       |    |                |
| 3  | 정선읍 봉양리 | 31-4  | 제방 | 106     | 4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환경부   |       |    |                |
| 4  | 정선읍 봉양리 | 33-6  | 제방 | 631     | 175   | “                 | 국토교통부 |       |    |                |
| 5  | 정선읍 봉양리 | 33-7  | 제방 | 429     | 111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강원도   |       |    |                |
| 6  | 정선읍 봉양리 | 33-9  | 제방 | 239     | 3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정선군   |       |    |                |
| 7  | 정선읍 봉양리 | 33-10 | 전  | 2,860   | 14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강원도   |       |    |                |
| 8  | 정선읍 봉양리 | 37-2  | 제방 | 1,676   | 712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정선군   |       |    |                |
| 9  | 정선읍 봉양리 | 37-7  | 전  | 255     | 45    | “                 | 정선군   |       |    |                |
| 10 | 정선읍 봉양리 | 91-1  | 도로 | 2,893   | 7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국토교통부 |       |    |                |
| 계  |         |       |    | 15,662  | 3,075 |                   |       |       |    |                |

## ● 토지조서(소로2-2호 : 2공구)

| 연번 | 위치      | 지번      | 지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 공부      | 편입    | 주소                | 성명    | 관계인   | 성명 |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
| 1  | 정선읍 애산리 | 415-163 | 제  | 1,689   | 112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강원도   |       |    |                |
| 2  | 정선읍 애산리 | 415-162 | 제  | 652     | 58    | “                 | 강원도   |       |    |                |
| 3  | 정선읍 애산리 | 383-1   | 천  | 192,037 | 57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환경부   |       |    |                |
| 4  | 정선읍 애산리 | 383-2   | 제  | 1,033   | 316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건설부   |       |    |                |
| 5  | 정선읍 애산리 | 919-2   | 제  | 948     | 273   | “                 | 건설부   |       |    |                |
| 6  | 정선읍 애산리 | 2-2     | 제  | 6,052   | 734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정선군   |       |    |                |
| 7  | 정선읍 애산리 | 3-1     | 임  | 8,790   | 89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기획재정부 |       |    |                |
| 계  |         |         |    | 211,201 | 1,639 |                   |       |       |    |                |

● 토지조서(소로3-10호 : 2공구)

| 연번 | 위치         | 지번          | 지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 공부      | 편입  | 주소                   | 성명        | 관계인   | 성명 |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
| 1  | 정선읍<br>애산리 | 388-2       | 전  | 2,044   | 45  | 세종특별자치시<br>도움6로 11   | 건설부       |       |    |                |
| 2  | 정선읍<br>애산리 | 386-1       | 도  | 5,807   | 32  | “                    | 국토<br>교통부 |       |    |                |
| 3  | 정선읍<br>애산리 | 415-91      | 제  | 2,620   | 261 | 강원특별자치도<br>춘천시 중앙로 1 | 강원도       |       |    |                |
| 4  | 정선읍<br>애산리 | 415<br>-163 | 제  | 1,689   | 168 | “                    | 강원도       |       |    |                |
| 계  |            |             |    | 12,160  | 506 |                      |           |       |    |                |

정선군 공고 제2023-1364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도로, 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고한) 군관리계획(도로, 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 선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공람목적 :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일원(파인앤유APT ~ 삼탄아트마인)
- 사업내용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군계획시설(궤도) : 신설 1개소(L=2,779m, A=38,261m<sup>2</sup>)
  -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 신설 1개소(L= 41m, B=10~11m)
  - 지구단위계획 : 궤도시설 신설 1개소 [L=2,779m(구역 내 305m), A=38,261m<sup>2</sup>(구역 내 3,923m<sup>2</sup>)]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3. 11. 24. ~ 2023. 12. 8.(계재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4.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입토지조서(교통시설 : 도로)

| 연<br>번 | 위치         | 지번    | 지<br>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br>고 |
|--------|------------|-------|--------|-----------|-----|-------|----|-------|----|--------------------|--------|
|        |            |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관계인   | 성명 | 소유권이외의권<br>리의종류및내용 |        |
| 1      | 고한읍<br>고한리 | 산1-17 | 임      | 4,890,186 | 451 | 정선군   | -  | -     | -  | -                  | -      |
| 계      |            |       |        | 4,890,186 | 451 |       |    |       |    |                    |        |

■ 편입토지조서(교통시설 : 궤도)

| 연<br>번 | 위치         | 지번    | 지<br>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br>고 |
|--------|------------|-------|--------|---------|-------|--------------------------|---------------------------------------------|-------|----|--------------------|--------|
|        |            |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관계인   | 성명 | 소유권이외의권<br>리의종류및내용 |        |
| 1      | 고한읍<br>고한리 | 3-1   | 대      | 5,677   | 663   | 한국광해<br>광업공단             | 원주시 혁신로<br>199(반곡동)                         |       |    |                    |        |
| 2      | “          | 3-6   | 대      | 225     | 225   | 김○수                      | 정선군 고한읍<br>고한4길 34                          |       |    |                    |        |
| 3      | “          | 3-9   | 전      | 3       | 3     | 국<br>(기획재정부)             | -                                           |       |    |                    |        |
| 4      | “          | 5-26  | 잡      | 48,913  | 3,923 | 대한불교조계종<br>제4교구말사정<br>암사 | 정선군 고한읍<br>함백산로 1410                        |       |    |                    |        |
| 5      | “          | 21    | 잡      | 6,268   | 109   | 한국광해<br>광업공단             | 원주시 혁신로<br>199(반곡동)                         |       |    |                    |        |
| 6      | “          | 21-4  | 임      | 10,366  | 1,148 | 김○정                      | 강도 안양지<br>동안구 관양동 1589<br>한양아파트<br>507-1201 |       |    |                    |        |
| 7      | “          | 25-3  | 도      | 2,903   | 1,814 | 국<br>(국토교통부)             | -                                           |       |    |                    |        |
| 8      | “          | 31-5  | 도      | 927     | 801   | 국(기획재정부<br>)             | -                                           |       |    |                    |        |
| 9      | “          | 36-7  | 대      | 2,580   | 55    | 정선군                      | -                                           |       |    |                    |        |
| 10     | “          | 36-17 | 대      | 2,126   | 479   | 정선군                      | -                                           |       |    |                    |        |
| 11     | “          | 36-19 | 대      | 750     | 223   | 정선군                      | -                                           |       |    |                    |        |
| 12     | “          | 274-4 | 천      | 13,132  | 2,310 | 국(환경부)                   | -                                           |       |    |                    |        |
| 13     | “          | 284   | 대      | 216     | 216   | 정선군                      | -                                           |       |    |                    |        |
| 14     | “          | 285   | 대      | 130     | 130   | 정선군                      | -                                           |       |    |                    |        |
| 15     | “          | 285-1 | 대      | 90      | 90    | 정선군                      | -                                           |       |    |                    |        |
| 16     | “          | 285-2 | 대      | 60      | 60    | 정선군                      | -                                           |       |    |                    |        |
| 17     | “          | 285-3 | 대      | 130     | 104   | 정선군                      | -                                           |       |    |                    |        |
| 18     | “          | 285-4 | 대      | 142     | 142   | 정선군                      | -                                           |       |    |                    |        |
| 19     | “          | 285-5 | 대      | 84      | 84    | 정선군                      | -                                           |       |    |                    |        |

|    |            |        |   |            |        |                          |                      |  |  |  |  |
|----|------------|--------|---|------------|--------|--------------------------|----------------------|--|--|--|--|
| 20 | “          | 285-6  | 대 | 102        | 102    | 정선군                      | -                    |  |  |  |  |
| 21 | “          | 285-7  | 대 | 116        | 116    | 정선군                      | -                    |  |  |  |  |
| 22 | 고한읍<br>고한리 | 285-8  | 대 | 178        | 178    | 정선군                      | -                    |  |  |  |  |
| 23 | “          | 산1-16  | 임 | 106,258    | 1,834  | 국(산림청)                   | -                    |  |  |  |  |
| 24 | “          | 산1-17  | 임 | 4,890,186  | 6,197  | 국(산림청)                   | -                    |  |  |  |  |
| 25 | “          | 산1-108 | 도 | 25,362     | 211    | 정선군                      | -                    |  |  |  |  |
| 26 | “          | 산1-145 | 도 | 5,499      | 83     | 정선군                      | -                    |  |  |  |  |
| 27 | “          | 산1-160 | 임 | 3,059,675  | 3,145  | 국(산림청)                   | -                    |  |  |  |  |
| 28 | “          | 산1-194 | 도 | 2,319      | 486    | 정선군                      | -                    |  |  |  |  |
| 29 | “          | 산1-195 | 임 | 4,058      | 348    | 국(산림청)                   | -                    |  |  |  |  |
| 30 | “          | 산1-208 | 임 | 5,670      | 1,581  | 정선군                      | -                    |  |  |  |  |
| 31 | “          | 산1-210 | 임 | 12,263     | 222    | 정선군                      | -                    |  |  |  |  |
| 32 | “          | 산1-212 | 임 | 786        | 76     | 정선군                      | -                    |  |  |  |  |
| 33 | “          | 산216-1 | 임 | 6,936,478  | 9,489  | 대한불교조계종<br>제4교구말사정<br>암사 | 정선군 고한읍<br>함백산로 1410 |  |  |  |  |
| 34 | “          | 산216-5 | 천 | 4,340      | 215    | 국(환경부)                   | -                    |  |  |  |  |
| 35 | “          | 산310-3 | 임 | 5,240      | 1,215  | 국<br>(국토교통부)             | -                    |  |  |  |  |
| 36 | “          | 산310-6 | 임 | 1,680      | 94     | 국<br>(기획재정부)             | -                    |  |  |  |  |
| 37 | “          | 산312-1 | 구 | 9,170      | 90     | 국<br>(기획재정부)             | -                    |  |  |  |  |
| 계  |            |        |   | 15,164,102 | 38,261 |                          |                      |  |  |  |  |

■ 편입토지조서(지구단위계획구역)

| 연<br>번 | 위치         | 지번   | 지<br>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br>고 |
|--------|------------|------|--------|---------|--------|--------------------------|----------------------|-------|--------|--------------------|--------|
|        |            |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관계인   | 성<br>명 | 소유권이외의권<br>리의종류및내용 |        |
| 1      | 고한읍<br>고한리 | 5-26 | 잡      | 48,913  | 46,030 | 대한불교조계종<br>제4교구말사정<br>암사 | 정선군 고한읍<br>함백산로 1410 | -     | -      | -                  | -      |
| 계      |            |      |        | 48,913  | 46,030 |                          |                      |       |        |                    |        |

정선군 공고 제2023-1372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 선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 신동읍 · 여량면 일원
- 사업내용 :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 : 도로 신설 2개소 (B=4m, L=137m, 148m), 변경 1개소(모퉁이변경)
  - 군계획시설(도로) : 신설 1개소 (B=10m, L=413m)
  - 군계획시설(주차장) : 신설 1개소 (A=578㎡)
  - 군계획시설(공공공지) : 신설 1개소 (A=478㎡)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3. 11. 24. ~ 2023. 12. 8.(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 신동읍 ·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도서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 신동읍 · 여량면 행정복지센터로 서면제출



4.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동도시지역

○ 편입토지조서(주차장2 : 신설)

| 연<br>번 | 위 치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 고       |
|--------|------------|--------|-----|---------|-----|-------|---------------------------------|-------|----|----------------|-----------|
|        |            |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 내용 |           |
| 1      | 신동읍<br>조동리 | 201-32 | 대   | 122     | 76  | 정선군   |                                 |       |    |                |           |
| 2      | 신동읍<br>조동리 | 201-90 | 대   | 1,775   | 82  | 이○래   | 201-3                           |       |    |                | 61/1775   |
|        |            |        |     |         |     | 정선군   |                                 |       |    |                | 126/1775  |
|        |            |        |     |         |     | 이○순   | 방제리 410-41                      |       |    |                | 136/1775  |
|        |            |        |     |         |     | 이○호   | 원주시 단계동 809<br>벽산아파트 106-1201   |       |    |                | 1275/1775 |
|        |            |        |     |         |     | 박○미   | 정선군 고한읍 고한3길<br>6-11, 비동 208호   |       |    |                | 154/1775  |
|        |            |        |     |         |     | 성○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br>도림천로 446,101동 902호 |       |    |                | 23/1775   |
| 3      | 신동읍<br>조동리 | 203    | 전   | 1,253   | 420 | 정선군   |                                 |       |    |                |           |
| 계      |            |        |     | 3,150   | 578 |       |                                 |       |    |                |           |

○ 편입토지조서(공공공지1 : 신설)

| 연<br>번 | 위 치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 고 |
|--------|------------|--------|-----|---------|-----|--------------|----------------------|--------------|------------------------------|----------------|-----|
|        |            |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 내용 |     |
| 1      | 신동읍<br>조동리 | 197-33 | 대   | 4       | 4   | 국<br>(기획재정부) |                      |              |                              |                |     |
| 2      | 신동읍<br>조동리 | 197-34 | 대   | 57      | 57  | 국<br>(기획재정부) |                      |              |                              |                |     |
| 3      | 신동읍<br>조동리 | 201-23 | 대   | 182     | 182 | 김○수          | 경북 예천군 예천읍<br>서본리 73 | 예천농업<br>협동조합 | 경상북도 예천군<br>예천읍 시장로 53       | 근저<br>당권자      |     |
| 4      | 신동읍<br>조동리 | 201-64 | 대   | 56      | 56  | 김○수          | 경북 예천군 예천읍<br>서본리 73 | 예천농업<br>협동조합 | 경상북도 예천군<br>예천읍 남본리<br>245-1 | 근저<br>당권자      |     |
| 5      | 신동읍<br>조동리 | 201-86 | 대   | 179     | 179 | 김○수          | 경북 예천군 예천읍<br>서본리 73 | 예천농업<br>협동조합 | 경상북도 예천군<br>예천읍 시장로 53       | 근저<br>당권자      |     |
| 계      |            |        |     | 478     | 478 |              |                      |              |                              |                |     |

■ 여량도시지역

○ 편입토지조서(소로1-11호선 : 신설)

| 연<br>번 | 위 치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 고 |
|--------|------------|---------|-----|---------|-------|--------------|--------------------------------------------|--------------|--------------------------------|----------------|-----|
|        |            |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 내용 |     |
| 1      | 여량면<br>여량리 | 103-6   | 도로  | 1,730   | 21    | 정선군          |                                            |              |                                |                |     |
| 2      | 여량면<br>여량리 | 104-2   | 답   | 541     | 28    | 김○규          |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br>장평리 32 대한2차@ 205동<br>1405호 |              |                                |                | 1/2 |
|        |            |         |     |         |       | 송○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br>호수로 896, 403동 402호         |              |                                |                | 1/2 |
| 3      | 여량면<br>여량리 | 105-7   | 전   | 5,924   | 863   | 김○하          | 141-37                                     |              |                                |                |     |
| 4      | 여량면<br>여량리 | 105-14  | 구거  | 246     | 14    | 국<br>(국토교통부) |                                            |              |                                |                |     |
| 5      | 여량면<br>여량리 | 105-16  | 답   | 1,555   | 446   | 이○순          | 371-15                                     |              |                                |                |     |
| 6      | 여량면<br>여량리 | 105-18  | 전   | 1,192   | 185   | 이○순          | 371-15                                     |              |                                |                |     |
| 7      | 여량면<br>여량리 | 109-11  | 구거  | 816     | 41    | 국<br>(농림부)   |                                            |              |                                |                |     |
| 8      | 여량면<br>여량리 | 371-59  | 전   | 819     | 4     | 정선군          |                                            |              |                                |                |     |
| 9      | 여량면<br>여량리 | 372-12  | 전   | 3,181   | 41    | 김○학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여량면 고양로 386-13              |              |                                |                |     |
| 10     | 여량면<br>여량리 | 372-14  | 전   | 3,097   | 57    | 김○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여량면 여량리 269-39              |              |                                |                |     |
| 11     | 여량면<br>여량리 | 372-16  | 전   | 3,775   | 705   | 전○석          | 274                                        |              |                                |                |     |
| 12     | 여량면<br>여량리 | 372-19  | 전   | 3,431   | 851   | 정○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br>15-35 1001동 901호         | 여량신용<br>협동조합 | 강원특별자치도<br>정선군 여량면<br>서동로 2911 | 근저당권자,<br>지상권자 |     |
| 13     | 여량면<br>여량리 | 372-20  | 전   | 2,985   | 401   | 김○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br>교동 1819-10                  |              |                                |                | 1/2 |
|        |            |         |     |         |       | 전○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북면 여량리 372-34               |              |                                |                | 1/2 |
| 14     | 여량면<br>여량리 | 372-117 | 전   | 2,081   | 525   | 최○도          | 309-1                                      |              |                                |                |     |
| 15     | 여량면<br>여량리 | 372-147 | 전   | 1,176   | 3     | 전○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여량면 여량리 372-18              | 여량농업<br>협동조합 | 강원특별자치도<br>정선군 여량면<br>여량리 277  | 근저<br>당권자      |     |
| 16     | 여량면<br>여량리 | 372-163 | 전   | 564     | 2     | 전○석          | 274                                        |              |                                |                |     |
| 계      |            |         |     | 33,113  | 4,187 |              |                                            |              |                                |                |     |

■ 고한사북도시지역

○ 편입토지조서(소로3-41호선 : 변경)

| 연<br>번 | 위<br>치     | 지<br>번  | 지<br>목 | 면 적 (㎡) |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br>고 |
|--------|------------|---------|--------|---------|-----|------|-----|----------------------|----------------------------------|--------------|---------------------------|-------------------|--------|
|        |            |         |        | 공부      | 기정  | 증감   | 변경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의<br>종류 및<br>내용 |        |
| 1      | 고한읍<br>고한리 | 104-2   | 도로     | 1,658   | 11  | -    | 11  | 국<br>(국토교통부)         |                                  |              |                           |                   |        |
| 2      | 고한읍<br>고한리 | 104-37  | 대      | 132     | 50  | -    | 50  | 전○천                  | 강원특별자치도<br>정선군 고한읍<br>고한1길 5-2   | 주식회사<br>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국제금융로 8길 26 | 근저<br>당권자         |        |
| 3      | 고한읍<br>고한리 | 104-38  | 대      | 16      | 4   | -    | 4   | 정선○○<br>○막국수유한<br>회사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로 79, 79-1  |              |                           |                   |        |
| 4      | 고한읍<br>고한리 | 104-123 | 대      | 10      | 5   | -    | 5   | 전○천                  | 강원특별자치도<br>정선군 고한읍<br>고한1길 5-2   | 주식회사<br>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국제금융로 8길 26 | 근저<br>당권자         |        |
| 5      | 고한읍<br>고한리 | 104-130 | 도로     | 15      | 3   | -    | 3   | 국<br>(기획재정부)         |                                  |              |                           |                   |        |
| 6      | 고한읍<br>고한리 | 104-161 | 도로     | 6       | 6   | -    | 6   | 국<br>(기획재정부)         |                                  |              |                           |                   |        |
| 7      | 고한읍<br>고한리 | 105-5   | 대      | 33      | 12  | -    | 12  | 정선○○<br>○막국수유한<br>회사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로 79, 79-1  |              |                           |                   |        |
| 8      | 고한읍<br>고한리 | 106-1   | 대      | 1,056   | 30  | -    | 30  | 정○자                  | 서울 서초구<br>서초동 1685 삼풍@ 15-105    |              |                           |                   |        |
| 9      | 고한읍<br>고한리 | 106-38  | 대      | 99      | 36  | -    | 36  | 전○자                  | 강원특별자치도<br>정선군 고한읍 고한리<br>106-38 | 고한신용<br>협동조합 | 정선군 고한읍<br>고한리 97-7, 97-8 | 근저<br>당권자         |        |
| 10     | 고한읍<br>고한리 | 106-39  | 대      | 7       | 1   | -    | 1   | 정선○○<br>○막국수유한<br>회사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로 79, 79-1  |              |                           |                   |        |
| 11     | 고한읍<br>고한리 | 274-32  | 대      | 154     | 33  | -    | 33  | 김○현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북평면 오대천로 599-47   |              |                           |                   |        |
| 12     | 고한읍<br>고한리 | 274-35  | 대      | 171     | 15  | 감) 5 | 10  | 정선군                  |                                  |              |                           |                   |        |
| 13     | 고한읍<br>고한리 | 274-36  | 대      | 1,180   | 60  | -    | 60  | 정선군                  |                                  |              |                           |                   |        |
| 14     | 고한읍<br>고한리 | 274-300 | 대      | 7       | 4   | -    | 4   | 정선군                  |                                  |              |                           |                   |        |
| 계      |            |         |        | 4,544   | 270 | 감) 5 | 265 |                      |                                  |              |                           |                   |        |

## ○ 편입토지조서(소로3-44호선 : 신설)

| 연<br>번 | 위 치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 고    |
|--------|------------|--------|-----|---------|-----|--------------|-------------------------------------------|-------|----|----------------|--------|
|        |            |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의 종류<br>및 내용 |        |
| 1      | 고한읍<br>고한리 | 85-16  | 도로  | 489     | 35  | 정선군          |                                           |       |    |                |        |
| 2      | 고한읍<br>고한리 | 85-17  | 대   | 141     | 17  | 정선군          |                                           |       |    |                |        |
| 3      | 고한읍<br>고한리 | 85-18  | 대   | 347     | 268 | 정선군          |                                           |       |    |                |        |
| 4      | 고한읍<br>고한리 | 85-21  | 대   | 228     | 14  | 김○영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리 86-1               |       |    |                | 25/228 |
|        |            |        |     |         |     | 김○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로 95                 |       |    |                | 77/228 |
|        |            |        |     |         |     | 신○옥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7길 20, 101동<br>1901호 |       |    |                | 73/228 |
|        |            |        |     |         |     | 주○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br>미금로 23, 109동 1601호         |       |    |                | 53/228 |
| 5      | 고한읍<br>고한리 | 88-1   | 도로  | 1,753   | 49  | 정선군          |                                           |       |    |                |        |
| 6      | 고한읍<br>고한리 | 91-70  | 도로  | 171     | 53  | 정선군          |                                           |       |    |                |        |
| 7      | 고한읍<br>고한리 | 91-87  | 대   | 41      | 38  | 정선군          |                                           |       |    |                |        |
| 8      | 고한읍<br>고한리 | 104-70 | 도로  | 136     | 13  | 국<br>(기획재정부) |                                           |       |    |                |        |
| 9      | 고한읍<br>고한리 | 104-92 | 대   | 237     | 5   | 국<br>(기획재정부) |                                           |       |    |                |        |
| 10     | 고한읍<br>고한리 | 106-2  | 도로  | 42      | 9   | 국<br>(국토교통부) |                                           |       |    |                |        |
| 11     | 고한읍<br>고한리 | 106-6  | 대   | 178     | 79  | 조○수          | 서울 마포구 창전동 438<br>신촌금호아파트 103-1804        |       |    |                |        |
| 계      |            |        |     | 3,763   | 580 |              |                                           |       |    |                |        |

## ○ 편입토지조서(소로3-45호선 : 신설)

| 연<br>번 | 위<br>치     | 지<br>번 | 지<br>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br>고   |
|--------|------------|--------|--------|---------|-----|-------|-------------------------------|-------|----|----------------|----------|
|        |            |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의 종류<br>및 내용 |          |
| 1      | 고한읍<br>고한리 | 85-3   | 대      | 1,461   | 207 | 김○수   | 48-2                          |       |    |                | 79/1461  |
|        |            |        |        |         |     | 김○분   | 산1-17                         |       |    |                | 136/1461 |
|        |            |        |        |         |     | 박○훈   | 92-4                          |       |    |                | 37/1461  |
|        |            |        |        |         |     | 안○순   | 90-22                         |       |    |                | 93/1461  |
|        |            |        |        |         |     | 전○화   | 동해시 동회동 442<br>대동아파트 30-1306  |       |    |                | 129/1461 |
|        |            |        |        |         |     | 원○숙   | 서울시 서대문구<br>연희동 187-84        |       |    |                | 165/1461 |
|        |            |        |        |         |     | 안○수   | 506                           |       |    |                | 46/1461  |
|        |            |        |        |         |     | 함○식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br>하슬라로 232번길 3-3 |       |    |                | 66/1461  |
|        |            |        |        |         |     | 구○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상갈래길 12-14 |       |    |                | 99/1461  |
|        |            |        |        |         |     | 최○민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46    |       |    |                | 16/1461  |
|        |            |        |        |         |     | 도○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42-1  |       |    |                | 11/1461  |
|        |            |        |        |         |     | 김○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42    |       |    |                | 15/1461  |
|        |            |        |        |         |     | 구○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33-19 |       |    |                | 7/1461   |
|        |            |        |        |         |     | 천○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29    |       |    |                | 31/1461  |
|        |            |        |        |         |     | 김○분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31    |       |    |                | 18/1461  |
|        |            |        |        |         |     | 전○열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40    |       |    |                | 17/1461  |
|        |            |        |        |         |     | 남○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두문동길 5     |       |    |                | 21/1461  |
|        |            |        |        |         |     | 송○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27    |       |    |                | 25/1461  |
|        |            |        |        |         |     | 안○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33-21 |       |    |                | 15/1461  |
|        |            |        |        |         |     | 조○열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39    |       |    |                | 7/1461   |
|        |            |        |        |         |     | 박○훈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br>먹거리길 51        |       |    |                | 13/1461  |
|        |            |        |        |         |     | 전○화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33-6  |       |    |                | 19/1461  |
|        |            |        |        |         |     | 김○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33-23 |       |    |                | 29/1461  |
|        |            |        |        |         |     | 김○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br>봉화산로 242         |       |    |                | 367/1461 |
| 2      | 고한읍<br>고한리 | 85-16  | 도로     | 489     | 4   | 정선군   |                               |       |    |                |          |
| 3      | 고한읍        | 85-18  | 대      | 347     | 8   | 정선군   |                               |       |    |                |          |

| 연<br>번 | 위 치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 고    |
|--------|------------|---------|-----|---------|-----|-------|-----------------------------------|-------|----|----------------|--------|
|        |            |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의 종류<br>및 내용 |        |
|        | 고한리        |         |     |         |     |       |                                   |       |    |                |        |
| 4      | 고한읍<br>고한리 | 85-20   | 대   | 66      | 6   | 최○민   | 106-57                            |       |    |                |        |
| 5      | 고한읍<br>고한리 | 85-25   | 대   | 86      | 2   | 도○순   | 62-73                             |       |    |                |        |
| 6      | 고한읍<br>고한리 | 106-26  | 대   | 79      | 5   | 정○기   | 영월군 북면 마차리<br>1146-2              |       |    |                | 32/79  |
|        |            |         |     |         |     | 김○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2길 55        |       |    |                | 21/79  |
|        |            |         |     |         |     | 황○심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함백산로 1448      |       |    |                | 26/79  |
| 7      | 고한읍<br>고한리 | 274-35  | 대   | 171     | 4   | 정선군   |                                   |       |    |                |        |
| 8      | 고한읍<br>고한리 | 274-36  | 대   | 1,180   | 337 | 정선군   |                                   |       |    |                |        |
| 9      | 고한읍<br>고한리 | 274-132 | 대   | 168     | 6   | 정선군   |                                   |       |    |                | 82/168 |
|        |            |         |     |         |     | 최○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리<br>274-108 |       |    |                | 86/168 |
| 10     | 고한읍<br>고한리 | 274-133 | 대   | 103     | 7   | 정선군   |                                   |       |    |                |        |
| 11     | 고한읍<br>고한리 | 274-135 | 대   | 90      | 26  | 김○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고한읍 고한1길 32        |       |    |                | 19/90  |
|        |            |         |     |         |     | 정선군   |                                   |       |    |                |        |
| 12     | 고한읍<br>고한리 | 274-136 | 대   | 66      | 2   | 정선군   |                                   |       |    |                |        |
| 계      |            |         |     | 4,306   | 614 |       |                                   |       |    |                |        |

정선군 공고 제2023 - 1373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공공요금 인상 및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적자운영 심화에 따라 복지목욕탕 사용료 인상 필요
- 나. 관외 이용자 증가에 따라 군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관외 사용자에게 대한 차등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복지목욕탕 사용료 기준액 변경과 관외자 사용료 신설(안 제18조)

- 목욕탕 시설 사용료 인상: 별표2
-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하한액 범위 변경(20%→40%)

| 구 분  |    | 대 인    | 소인, 취약계층 | 1월 이용         | 비고 |
|------|----|--------|----------|---------------|----|
| 변경 전 |    | 3,500원 | 2,500원   | 50,000원(25매)  |    |
| 변경 후 | 군민 | 4,000원 | 2,500원   | 60,000원(20회)  |    |
|      | 관외 | 6,000원 | 4,000원   | 100,000원(20회) | 신설 |

3.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월)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70),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회계 및 운영) 중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사용료의 결정) 중 “각 20퍼센트 범위안에서”를 “각 40퍼센트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26조(준용) 중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비 고            |
|----|-------------|---------------------|----------------|
| 1  | 고한읍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                |
| 2  | 사북읍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                |
| 3  | 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30      |                |
| 4  | 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 목욕탕<br>(2003년) |
| 5  | 화암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                |
| 6  | 남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                |
| 7  | 여량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                |
| 8  |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 목욕탕<br>(2004년) |
| 9  | 북평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5     |                |
| 10 | 임계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                |
| 11 | 임계 목욕탕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 2009년          |
| 12 | 북평 목욕탕      | 정선군 북평면 북평중앙로길 45   | 2015년          |
| 13 | 화암 목욕탕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6-16 | 2017년          |
| 14 | 남면 목욕탕      | 정선군 남면 별어곡1길 26     | 2023년          |

## 【별표 2】

## 시설 사용료 기준(제18조 관련)

## ○ 읍면 복지회관

(단위: 원)

| 구 분       | 기 준 | 사용료(기준액) | 비 고 |
|-----------|-----|----------|-----|
| 1. 예식장    | 1회  | 50,000   | 2시간 |
| 2. 다목적집회장 | 1회  | 35,000   | 4시간 |

## ○ 목욕탕

(단위: 원)

| 구 분 | 기 준    |      | 이용료     | 비고 |
|-----|--------|------|---------|----|
| 군 민 | 1회 이용권 | 대인   | 4,000   |    |
|     |        | 소인   | 2,500   |    |
|     |        | 취약계층 | 2,500   |    |
|     | 월 이용권  | 20회  | 60,000  |    |
| 관 외 | 1회 이용권 | 대인   | 6,000   |    |
|     |        | 소인   | 4,000   |    |
|     |        | 취약계층 | 4,000   |    |
|     | 월 이용권  | 20회  | 100,000 |    |

○ 소인 : 미취학 아동

○ 대인 : 6세이상 ~ 64세이하

○ 취약계층: 경로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회계 및 운영) ①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br>②·③ (생략)                                           | 제15조(회계 및 운영) ①-----<br>-----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br>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기준액의 상·하한 각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지역실정, 물가, 시설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br>②·③ (생략) | 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 -----<br>-----<br>-----40퍼센트 범위<br>----- 한다.<br>②·③ (현행과 같음)   |
|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 제26조(준용) -----<br>-----<br>-----<br>-----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 【별표 1】

##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 〈변경 전〉

|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비 고 |
|----|-------------|------------------|-----|
| 1  | 고한읍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     |
| 2  | 사북읍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     |
| 3  | 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30   |     |
| 4  | 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     |
| 5  | 화암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     |
| 6  | 남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     |
| 7  | 여량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     |
| 8  |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     |
| 9  | 북평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5  |     |
| 10 | 임계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     |

## 〈변경 후〉

|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비 고            |
|----|-------------|---------------------|----------------|
| 1  | 고한읍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                |
| 2  | 사북읍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                |
| 3  | 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30      |                |
| 4  | 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 목욕탕<br>(2003년) |
| 5  | 화암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                |
| 6  | 남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                |
| 7  | 여량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                |
| 8  |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 목욕탕<br>(2004년) |
| 9  | 북평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5     |                |
| 10 | 임계면종합복지회관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                |
| 11 | 임계 목욕탕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 2009년          |
| 12 | 북평 목욕탕      | 정선군 북평면 북평중앙로길 45   | 2015년          |
| 13 | 화암 목욕탕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6-16 | 2017년          |
| 14 | 남면 목욕탕      | 정선군 남면 별어곡1길 26     | 2023년          |

## 【별표 2】

(단위: 원)

| 시 설 명                                   | 변경 전  |         | 변경 후  | 비고   |        |    |
|-----------------------------------------|-------|---------|-------|------|--------|----|
|                                         | 기준    | 사용료     |       |      |        |    |
| 1. 목욕탕                                  | 1회    | 3,000   | 1회    | 대인   | 4,000  | 군민 |
|                                         |       |         |       | 소인   | 2,500  |    |
|                                         |       |         |       | 취약계층 | 2,500  |    |
|                                         |       |         | 월 이용권 | 20회  | 60,000 | 관외 |
|                                         |       |         | 1회    | 대인   | 6,000  |    |
| 소인                                      | 4,000 |         |       |      |        |    |
| 취약계층                                    | 4,000 |         |       |      |        |    |
| 월 이용권                                   | 20회   | 100,000 |       |      |        |    |
| 2. 회의실<br>가. 예식장<br>나. 다목적<br>집회장<br>기타 | 1회    | 50,000  | 변경 없음 |      |        |    |
|                                         | 1회    | 35,000  |       |      |        |    |

○ 소인 : 미취학 아동

○ 대인 : 6세이상 ~ 64세이하

○ 취약계층 : 경로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정선군 공고 제2023-1403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가.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목재문화 확산 및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조정(안 제10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 현 행 |        |                    | 개 정 |        |                    |
|-----|--------|--------------------|-----|--------|--------------------|
| 구분  | 체험료    |                    | 구분  | 체험료    |                    |
|     | 개인     | 단체(20인 이상)         |     | 개인     | 단체(20인 이상)         |
| 성인  | 5,000원 | 개인체험료의<br>100분의 70 | 성인  | 2,000원 | 개인체험료의<br>100분의 70 |
| 어린이 | 5,000원 |                    | 청소년 | 1,000원 |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2613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산림과
- 전화: 033-560-2252
- 팩스: 033-560-201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 견 | 비고 |
|--------|------|-----|-----|----|
|        | 찬 성  | 반 대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단위: 원)

| 구 분   |     | 체 험 료  |                     | 비 고                                 |
|-------|-----|--------|---------------------|-------------------------------------|
|       |     | 개인     | 단체(20인 이상)          |                                     |
| 목공예체험 | 성 인 | 2,000원 | 개인 체험료의<br>100분의 70 |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br>각종 재료비는 별도<br>부담한다. |
|       | 청소년 | 1,000원 |                     |                                     |
| 목재전시관 | 성 인 | 무료     |                     |                                     |
|       | 어린이 | 무료     |                     |                                     |

## [비 고]

1. 목공체험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목재전시체험관, 목공체험실 등으로 한다.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4.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7조(목재 이용 증진 등)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1408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 2차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의하여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건축물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연락 불가능함으로 철거 결정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정 선 군 수

1. 공고내용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 2차
2. 공고기간 : 2023. 12. 1. ~ 2023. 12. 29. (28일간)
3. 공고방법 : 일간신문, 전국 시·군·구 게시관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5. 공고대상 :

| 구분 | 위치 (정선군)                                | 용도 | 구조           | 소유자 | 심의결과 |
|----|-----------------------------------------|----|--------------|-----|------|
| 1  | 고한읍 고한리 281번지 일원<br>※고한읍생태산림욕장 및 약수터 부근 | 주택 | 목조<br>슬레이트지붕 | 미상  | 철거   |
| 2  |                                         | 주택 | 목조<br>슬레이트지붕 | 미상  | 철거   |

6. 기타사항

가. 상기 특정빈집에 대하여 30일 이내 철거를 요청하는 바이며, 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건축팀(☎033-560-249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